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임기제 다급 공무원 [청년보좌역]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4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근무기간
전문임기제 다급	1명	위원장실(세종특별자치시)*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1년 연장 가능(최장 2년 근무)

※ 임기연장 시에도 「청년기본법」 상 청년 나이(만19~34세) 요건 적용

* 실제 근무장소는 업무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담당업무
청년보좌역	○ 위원회 국정과제 및 정책에 대한 청년의 인식과 의견 수렴 ○ 위원회 정책추진에 대한 청년 참여 촉진 ○ 위원회 2030자문단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 타부처 청년보좌역 간 업무협조 ○ 기타 청년정책과 관련한 위원장 지시사항 검토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청년기본법 상 청년(19세~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나.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채용분야	아래 응시자격요건 중 1개 선택		
청년 보좌역	응시 자격 요건	경력	* 경력①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경력②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경력③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위	* 학위①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등
	▶ 관련분야 <경력> 청년정책·제도 관련 업무, 청년 대상 홍보·마케팅 관련 업무 등 경력 <학위> 행정학, 법학, 경영학, 경제학, 정치외교학, 사회복지학 또는 관련 유사 전공		
	우대요건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고려사항 반드시 확인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고려사항]

■ 공통사항

- **응시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4.30.)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4.13.)**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응시자격요건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예) 경력① ☒ / 경력② / 경력③ / 학위①

→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1개 선택하여 응시(경력요건과 학위요건을 중복 선택 불가)

-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별도 제출 필요)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 경력 통산(공무원 경력+민간 경력) 불가
-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 '학위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우대요건

○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기간별 차등우대)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 응시자격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하여는 우대하지 않음
- * 관련 경력 통산(공무원 경력+민간 경력) 가능
-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학위등급별 차등우대)

- *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 복수의 학위 소지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경력 인정 관련 유의사항]

■ 경력(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의 인정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인정하는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재), 근무형태(주근무시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공무원 경력도 해당)

- * 발급기관의 경력증명서 서식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별도 제공하는 서식(공고문)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함
-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등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업무분장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단, 기관 날인이 없는 내부 출력자료 등은 증빙서류의 효력을 갖지 않음
- *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이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공고문상의 관련 분야'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 확인(미포함 시 하단에 기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수행한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불인정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도 제출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 검증을 위해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모두 제출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 경력증명서 인정 예시 "붙임4" 참조

5 시험 방법

①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일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 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 ② 담당 예정 업무와의 직무 연관성
- ③ 청년정책 제안서의 논리성 및 창의성
- ④ 우대요건

②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5개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④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⑤ 국정철학

▶ 평가방식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 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 결정
-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 응시자가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응시자 본인의 상·중·하 개수 공개(면접위원별·평정요소별 개수는 비공개)

6 시험 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6. 4. 1.(수) ~ 4. 13.(월)	'26. 4. 8.(수) ~ 4. 13.(월)	'26. 4. 24.(금)	'26. 4. 30.(목)	'26. 5. 12.(화)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시험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나라일터(gojobs.go.kr)에 게재 예정
- 공고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변경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4. 8.(수) ~ 4. 13.(월)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 등기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 응시원서 봉투 겉표지에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제출’** 기재
 -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 접수 가능
 - ※ 방문 접수할 경우 반드시 사전연락
- 문 의 처 : (채용담당) ☎ 044-200-7181

[안 내 사 항]

‘26년도 청년보좌역 채용은 25개 기관*에서 진행되니(기관별 채용 일정 상이),
1개 기관만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수입인지 필수)	○ 별지서식 제2호
	주민등록초본 1부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청년정책 제안서 1부	○ 별지서식 제8호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9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10호
	청년DB 프로필 등록 신청서	○ 붙임5 출력 방법 참조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응시자격 또는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 붙임4 참조
	학위 증명서 사본 1부 ※ 응시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으로 선택한 학위 증명서에 한하여 제출	○ 졸업증명서, 학위증 등 ※ 경력①, 학위①, 우대요건 해당자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 학위를 응시요건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별지서식 제7호 ※ 우대요건 해당자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별지서식 제9호 제출)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5. 12. ~ '26. 6. 1.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예정일 : 2026년 5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 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업무 실적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최장 2년 근무)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구 분	2026년 기준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다급	70,782	50,272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등)】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 2. 12., 2014. 10. 8., 2014. 11. 19.>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 학교를 포함한다)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청년보좌역	전문임기제 다급	1명	위원장실(세종시) * 실제 근무장소는 업무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주요 업무	○ 위원회 국정과제 및 정책에 대한 청년의 인식과 의견 수렴 ○ 위원회 정책추진에 대한 청년 참여 촉진 ○ 위원회 2030자문단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 타부처 청년보좌역 간 업무협조 ○ 기타 청년정책과 관련한 위원장 지시사항 검토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조정능력		
필요 지식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업무 절차 관련 지식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 ○ 정부 정책에 대한 분석 및 문제해결(대안제시) 방안에 대한 지식		
응시 자격 요건	경력	* 경력①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경력②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경력③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위	* 학위①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 졸업자등	
	▶ 관련분야 <경력> 청년정책·제도 관련 업무, 청년 대상 홍보·마케팅 관련 업무 등 경력 <학위> 행정학, 법학, 경영학, 경제학, 정치외교학, 사회복지학 또는 관련 유사 전공		
우대요건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경력(기간별 차등우대)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학위등급별 차등우대) * 복수의 학위 소지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총괄표 작성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서류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4.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5.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A4 3매 이내로 작성
6.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별지서식에 따라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
7. 청년정책 제안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필수서류	○ 별지서식에 따라 요약서 A4 1매 이내, 세부계획 A4 3매 이내로 작성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9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9.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10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구 분	내 용
10. 청년DB 프로필 등록 신청서	○ 붙임5의 출력 방법을 참조하여 제출
11.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응시자격 및 우대증빙자료	○ 해당자에 한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함께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 부서, 직위(급),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주근무 시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또는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단, 기관 날인이 없는 내부 출력물 등은 증빙서류의 효력을 갖지 않음 ○ 경력 인정 관련 유의사항(p.4) 및 증명서 예시(붙임4) 반드시 참고
12. 학위 증명서 : 응시자격 및 우대증빙자료	○ 졸업(예정) 증명서, 학위증 등 - 경력① 또는 학위①을 응시자격요건으로 선택한 경우와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소지자 제출
13.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우대증빙자료	○ 우대요건으로 석·박사 학위를 선택한 경우 해당 학위에 한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스테이플러 사용금지(초본 포함)**

* 단면 인쇄, 기본 인쇄로 인쇄하여 제출(**양면 인쇄 및 모아찍기 금지**)

* 해당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증빙자료로 확인 불가 시 자격요건, 우대요건 등이 불인정되며 **착오·누락·허위 기재 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붙임 4

경력증명서(예시) ※ 증명서 형식 요건 참고 (관련직무는 직무기술서 확인)

경 력 증 명 서(예시)

발급자 성명, 연락처 확인

담당자: 김○○
연락처: 044-200-7182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이○○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1992.01.0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직급	사례 1 부서 및 직위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① 근무형태(주 근무시간) 미기재 ② 담당업무 미기재 → 담당업무, 근무형태 불명확 사례 2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담당업무: 행정심판 안전검토 및 행정심판 관련 법률자문 / 주35시간 근무) ① 근무형태(주 근무시간) 기재 ② 담당업무 기재			
	2022.03.04-2024.12.17	행정주사보				
	2024.12.18-2025.07.31	행정주사				
	근무기간 및 직급 기재 확인					
근무년한	3년 5월		최종직위또는직급	행정주사		
퇴직사유			퇴직일			
상 변 사 항	포상			징계		
	년월일	종류	시행처	년월일	종류	시행처
직 위 해 제	년월일		사유		처분처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발급일, 발급기관, 기관날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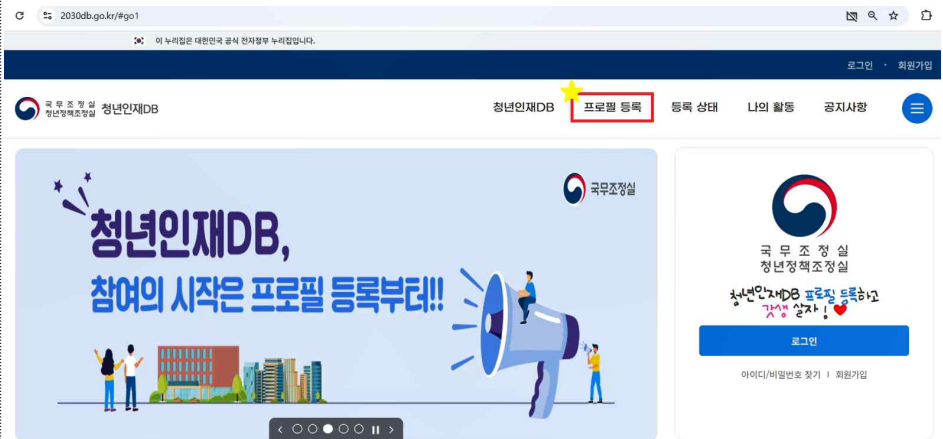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관련분야 경력에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제공하는 별지서식 제6호를 활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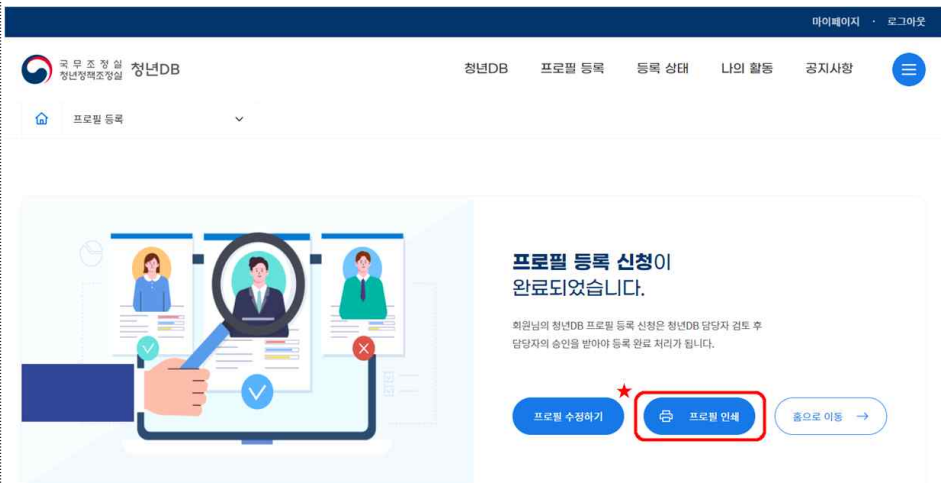
청년인재 DB 활용 방법

□ 청년인재DB 프로필 등록 및 「청년인재DB 프로필 등록 신청서」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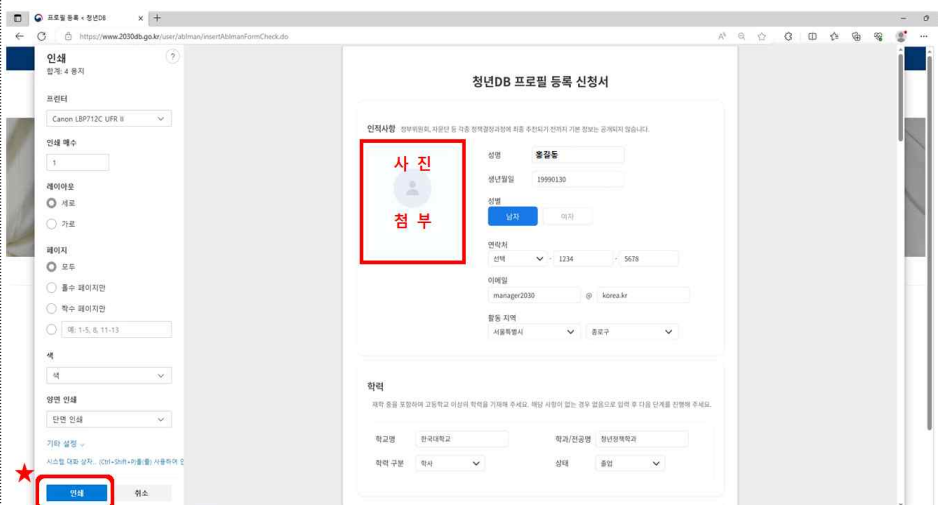
- ① 청년인재DB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상단의
「프로필 등록」을
클릭하고 프로필 등록



- ② 프로필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프로필 인쇄」 클릭
※ 담당자의 승인
없이도 인쇄 가능



- ③ 「인쇄」 클릭,
「청년인재DB 프로필
등록 신청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체 출력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

성 명	응시분야	응시직급
김○○	청년보좌역	전문임기제 다급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필수여부	제출여부
① 제출서류 총괄표	필수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 수입인지 필수제출(면제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필수	☐ 제출 ☐ 미제출
③ 주민등록초본	필수	☐ 제출 ☐ 미제출
④ 이력서 (별지서식 제3호)	필수	☐ 제출 ☐ 미제출
⑤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제4호)	필수	☐ 제출 ☐ 미제출
⑥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제5호)	필수	☐ 제출 ☐ 미제출
⑦ 청년정책 제안서 (별지서식 제8호)	필수	☐ 제출 ☐ 미제출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9호)	필수	☐ 제출 ☐ 미제출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10호)	필수	☐ 제출 ☐ 미제출
⑩ 청년DB 프로필 등록 신청서 (청년DB 출력물)	필수	☐ 제출 ☐ 미제출
⑪ 경력(재직) 증명서 (별지서식 제6호)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⑫ 학위 증명서 사본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⑬ 석·박사 학위 소지자 학위논문 요약서 (별지서식 제7호)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 해당사항에 체크 ☒

응시원서(원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다급 / 청년보좌역	
응시자격(하나만 선택)		경력	☐ 경력① / ☐ 경력② / ☐ 경력③
		학위	☐ 학위①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해당 / 해당없음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다급 / 청년보좌역	
응시자격		해당사항 기재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분야 기재
(예) 전문임기제 다급 / 청년보좌역
 - ② 응시자격 : 응시하려는 분야의 응시자격 중 하나를 선택 ☒
 - * 반드시 하나의 응시자격만 선택할 것(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응시자격을 선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이므로 반드시 확인
 - * 응시자가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으로만 심사하며, 응시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다른 자격요건으로 심사하지 않음
 - * 응시원서에 기입한 응시자격 선택표시와 이력서에 기입된 응시자격 선택표시가 다를 경우, 이력서를 기준으로 심사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수입인지 미첨부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필수서류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우표형식일 경우 응시원서에 붙이고, 별도 출력물인 경우 뒷장에 첨부
-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3호>

이력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i>담당자 기재</i>	응시 분야	청년보좌역	응시 자격 요건	선택	성명
					☐ 경력① / ☐ 경력② / ☐ 경력③ ☐ 학위①	

2.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8.1.1 ~ 24.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8.5.1~18.12.31.(육아휴직)	과장 (4급)	소송, 법령 제개정 검토 등 * 경력증명서, 분장표 상 업무 기재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종류		학위 취득일
	법학		법학학사		00.00.00.

3. 우대요건

※ 불필요한 항목 삭제하거나, 내용 추가가 필요하면 줄 추가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응시자격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하여 작성)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24.12.6.~25.3.1.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24.12.6.~25.1.1.(육아휴직)	행정주사 (6급)	송무, 유권해석 * 경력증명서, 분장표 상 업무 기재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종류		학위 취득일
	법학		법학석사		'00.00.00.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력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 『이력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분야 작성
-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직위의 응시자격 요건 선택(반드시 하나의 요건 선택, 중복선택 불가)
※ 응시자격요건 미선택 또는 중복선택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2. 응시자격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학위만 기재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경력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

① 경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모든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근무형태(주근무시간), 담당업무 기재 필수** (경력인정 관련 유의사항 필독)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재직증명서 첨부),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주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경력기간중 근무시간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 경력은 근무형태에 '전임' 기재
 -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② 학위

- 응시자격으로 사용할 학위에 한하여 기재하고, 전공분야·학위종류·학위 취득일 반드시 기재
-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에 대하여만 작성(응시자격요건으로 선택하지 않은 학위, 경력 작성하지 말 것)

3. 우대요건-경력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응시자가 응시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관련 직무분야에서의 경력을 '3.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기재하고, 응시자격 경력 기재방법을 참고하여 기재

3. 우대요건-학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 우대요건으로 활용할 학위에 대하여만 기재
- 학위증빙서류 및 학위논문요약서 첨부하였는지 확인

자 기 소 개 서

성명		지원분야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은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지원분야	
----	--	------	--

◎ 직무수행계획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1.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인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2.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지서식 제6호>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근무형태 ②	비고 ③												
	부터	까지																	
	(예시) '22.6.30	'23.7.1	(주) 00	사원	도시계획, 도시설계	전임 (주 00시간)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발급자 <table border="1"> <tr><td>소속</td><td></td></tr> <tr><td>직위</td><td></td></tr> <tr><td>성명</td><td>(인)</td></tr> </table>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확인자 <table border="1"> <tr><td>소속</td><td></td></tr> <tr><td>직위</td><td></td></tr> <tr><td>성명</td><td>(인)</td></tr> </table>								소속		직위		성명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근무형태 : 주당 근무시간 기재(예-주 00시간),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시(시간) 표시 ③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서식 7호>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I. 연구목적

1.
- 가.
- 1)
- 가)
- (1)
- (가)

II. 연구내용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8호>

[작성요령] ※ 작성요령은 제출시 삭제 요망

1. 청년정책 제안서(요약):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맑은고딕, 11)
2. 청년정책 제안서(세부계획): 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휴먼명조, 15)
② 앞서 작성한 요약본과 동일한 주제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분야와 관련한 청년정책 제안 작성

청년정책 제안서(요약)

이름		연락처		전자우편	
----	--	-----	--	------	--

제 목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문제점(원인)	
개선안 또는 정책대안	
예상 효과	
참조 문헌	

제 목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내용
- 내용

2 현황 및 문제점(원인)

- 내용
- 내용

3 개선안 / 정책대안

- 내용
- 내용

4 예상효과

- 내용
- 내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에 따른 학력·경력·자격증, 수상실적,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 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11호>

※ 신청자에 한하여 작성 후 청구기간에 메일(nikee1011@korea.kr) 제출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5. 12. ~ '26. 6. 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Decide Now, Thrive Forever!

당신의 커리어 리셋,
지금이 바로 그 선택의 순간입니다.



지금 행복하시나요?

당신의 다음 커리어 스텝은
공직 알뜰막.다에서
확인하세요



“일을 하는데 왜 허전하지?”, “퇴근은 했는데 왜 마음은 퇴사를 외치지?”,
“월급은 늘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시나요?
지금 다시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안정과 성장, 가치와 행복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 공직에서
당신의 다음 커리어를 키워주세요.



나라미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
공고 확인하기



공무원 채용시험
일터로서의
공직의 매력
확인하기